



스포츠응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

수원시체육회

수원 스포츠 응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제 정 2021. 04. 27.

제 정 2023. 02. 13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시 체육진흥조례 제17조 제2항 및 수원시체육회 규정 제4조에 따라 수원을 대표하여 경기도체육대회 및 국내외 각종대회에 출전하는 수원시 선수단을 응원하여 팀에 활력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수원시 체육발전 및 홍보에 기여하기 위한 “수원 스포츠 응원단”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단체의 명칭은 “수원 스포츠 응원단”(이하 응원단)이라 칭한다.

제 2 장 사 업

제3조(사업) 응원단은 제1조 목적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각종 국내·외 대회에 출전하는 수원시 선수단 응원.
2. 스포츠를 수원시의 문화상품으로 육성, 보급, 홍보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.
3.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.
4. 수원시의 각종 체육, 문화행사에서 적극 참여.
5. 수원시의 문화교류 사업 참여.
6. 그 밖에 응원단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.

제 3 장 구 성

제4조(구성) 응원단의 구성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응원단은 집행부(단장, 부단장, 간사), 운영위원, 팀장, 단원으로 구성한다.
2. 응원단은 수원시내 거주하는 시민으로 모집하여 구성한다.
3. 응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 둘 수 있다.

제5조(위촉) 단원 위촉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단장은 복수로 추천하고 추천자 중 1인에 대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
2. 부단장은 1명에 대하여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이 위촉한다.
3. 간사는 단장이 추천하여 추천자에 대하여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이 위촉한다.
4. 운영위원 및 자문위원은 추천·선발에 의하여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이 위촉한다.
5. 응원단 팀장 및 단원은 모집·선발에 의하여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이 위촉한다.

제6조(임기) 응원단의 임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1. 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 할 수 있다.<개정 2023. 02. 13.>
2. 집행부(부단장, 간사) 및 팀장,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<개정 2023. 02. 13.>
3. 전임단장 및 팀장은 응원단의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.
4. 스포츠응원단의 활동기간은 임명된 해 3월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한 해의 2월 말까지로 한다.
<개정 2023. 02. 13.>

제 4 장 운 영

제7조(운영비) 응원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수원시체육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<개정 2021. 04. 27.>

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개정 2023. 02. 13.>

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